FTA FOCUS

FTA의 전자상거래 조항에 대한 향후 개선 방향

송선욱 | 백석대학교 경상학부 교수, 한국관세학회 회장

E REPORT

FTA의 전자상거래 조항에 대한 향후 개선 방향*

송선욱
백석대학교 경상학부 교수
한국관세학회 회장

FTA 협상에서 국경 간 전자상거래를 위한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규정을 마련하여 적용하게 된다면 보다 효과적인 국경 간 전자상거래 관리 및 정착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체결된 주요 FTA상의 전자상거래 조항을 확인하고 그 가운데 공통된 조항 및 필요한 조항을 확인하여 전자상거래 모델 조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모델 조항을 통해 향후 FTA 협상 시 또는 추가 개정 협상 시 활용하도록 하여 국경 간 전자상거래 분야의 지속적인 발전과 효과적인 FTA 협상이 이루어지도록 기여하고자 한다.

1 FTA의 전자상거래 조항 현황과 규정 유형 분석

1. FTA의 전자상거래 조항 현황과 규정 유형 분석

1) RTA하에서 전자상거래 조항 현황

2017년 5월 현재 WTO에 통보된 RTA 가운데 전자상거래 규정이 있는 RTA는 75개로 전체의 27%를 차지하였다. 2019년 12월에는 전체 RTA 가운데에서 84개에서 명시적으로 전자상거래를 다루고 있었다(ESCAP, 2019).

2022년 현재 340개 RTA 가운데 34%를 차지하는 117개 RTA에서 전자상거래 규정이 있다(https://rtais.wto.org/UI/PublicSearchByCr.aspx).

이처럼 RTA에서 전자상거래 관련 규정을 확립하는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 규정은 평균적으로 2014년과 2016년 사이에 발효된 모든 RTA의 60% 이상에서 포함되어 있다.

전자상거래 관련 규정을 가진 RTA 수의 이 같은 증가는 개발도상국과 관련된 RTA의 급증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2) FTA의 전자상거래 규정 형태 분석

전자상거래 규정의 구조적 형태는 동일한 국가에서 협상한 경우라도 RTA 간에 상당한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

2017년의 Jose Antonio Monteiro & Robert TeH의 연구 분석을 바탕으로 RTA의 전자상거래 규정을 크게 3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1]

첫째, 전자상거래 규정을 전용 장(Chapter)에 두는 특정 장/절(chapter/section) 형태이다. 전자상거래를 제공하는 75개 RTA 중 61개 RTA가 전자상거래 전용 챕터 형태로 되어 있다.

* 본 연구는 「e-비즈니스 연구」 제23권 제7호(2022.12)에 게재된 "FTA의 전자상거래 조항에 대한 향후 개선 방향"을 요약, 정리한 것임.

1 Jose Antonio Monteiro and Robert Teh. 2017. Provisions on Electronic Commerce in Regional Trade Agreements. Geneva: World Trade Organization(WTO). 인용한 연구는 2017년 5월 현재 시행되고 WTO에 고시된 275개 RTA를 분석하여 종합적인 정량적 분석을 제공한 첫 번째 연구로 본 연구의 이 장에서는 이 연구의 분석 결과를 참고하여 유형을 분석하였음.

둘째, 전자상거래 규정을 특정 조항(specific article)에 두는 형태이다. 전자상거래를 제공하는 75개 RTA 중 8개의 RTA가 전자상거래 특정 조항을 두고 있다.

셋째, 전자상거래 규정을 비특정 조항(non-specific article)에 두는 형태이다. 특정 사례의 전자상거래를 포함한 이슈 또는 광범위한 이슈들을 나열하는 조항이다. 전자상거래를 제공하는 75개 RTA 중 56개의 RTA가 전자상거래 규정을 비특정 조항에 두고 있다.

기타 형태로 RTA에 명시된 특정 전자상거래 규정(provision)과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논의에 관한 당사국의 견해를 확인하는 부가 서신(side letter) 교환, 전자상거래에 대한 공동성명서(joint statement)뿐만 아니라 부속서(annex)와 같은 부가문서의 형태가 있다.

3) FTA의 전자상거래 관련 주요 규정 내용 분석

전자상거래 규정의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는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은 다양한 전자상거래 관련 이슈들이 모두 고려 대상이 된다. 즉, 전자상거래의 전제조건이 되는 물리적

[그림 1] 전자상거래 관련 이슈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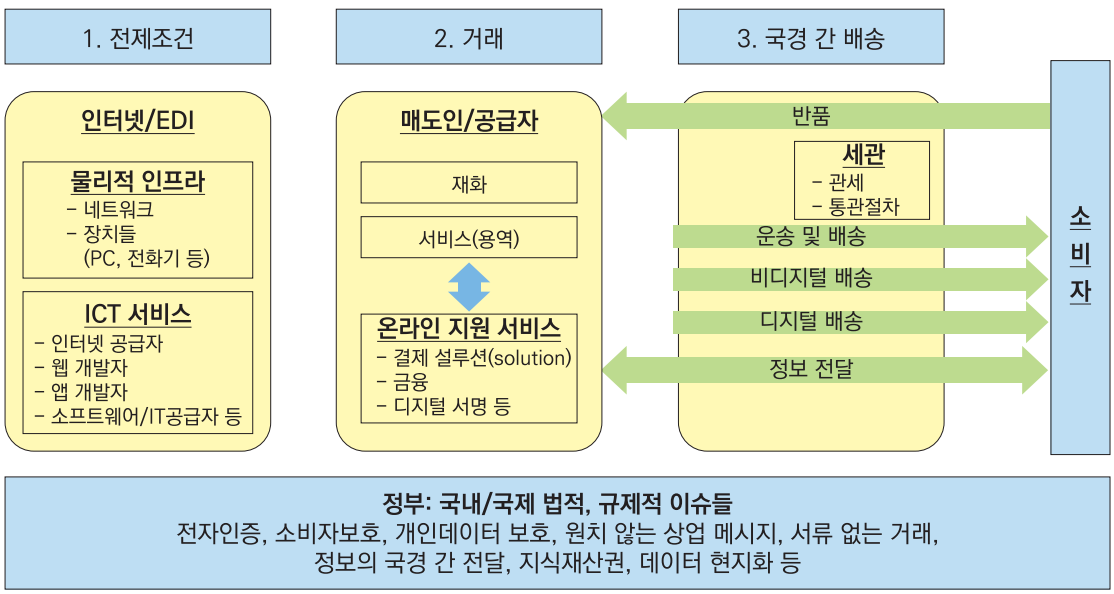

자료: Jose Antonio Monteiro & Robert The(2017), Provisions on Electronic Commerce in Regional Trade Agreements. WTO, 13.

인프라와 ICT 서비스, 실제적으로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온라인 지원 서비스, 국경 간 배송에 따른 통관 및 관세 이슈와 전자정보,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이들 국경 간 거래를 규율하기 위한 다양한 국내 및 국제 법적, 규제적 이슈들이 모두 고려 대상이 된다.

이들 국경 간 전자상거래의 단계별 이슈들 중에서 FTA에 규정될 주요 내용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 차원의 국내 및 국제적 법규와 규제적 이슈들, 관세 및 통관 이슈, 그리고 기타 관련된 협력 등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1) 정부 차원의 국내 및 국제적 법규와 규제적 이슈

정부 차원의 국내 및 국제적 법규와 규제적 이슈들에는 전자상거래를 관장하는 국내법적 기본틀, 전자인증과 전자서명, 온라인 소비자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가간 정보 전송, 서류없는 거래에 대한 규정을 들 수 있다. 또한 사이버 보안(Cybersecurity), 소스코드(Source Code)와 같은 지식재산권, 전산 시설의 위치,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Unsolicited electronic message), 열린 정부 등에 대한 규정들이 있다.

첫째, 전자상거래를 관장하는 국내법적 기본틀을 확립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전자상거래에 관한 UNCITRAL 모델법(1996)과 일치하는 법적 기본틀을 확립하거나 전자상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인 조치들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국내법에 확립될 것에 관한 내용이다.

둘째, 국경 간 전자상거래를 촉진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전자서명, 전자인증, 소비자 보호, 데이터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의 규정을 명확하게 확립하는 것이다.

전자서명이나 전자인증은 종이서류와 동일한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하는 수단이다. 이러한 전자서명이나 전자인증에 대한 FTA 규정은 일반적으로 "전자인증을 부인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형식으로 의무적 성격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 보호 규정은 국경 간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중요한 부분이므로 FTA에 규정될 필요가 있는데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FTA의 조항은 정부가 소비자 보호법을 유지하거나 채택할 것을 요구하며 이러한 법률이 투명하고 효과적이어야 하며 오프라인 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와 동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기타 관련 조항은 소비자 보호 기관 간의 협력을 요구한다.

또한 개인 프라이버시 및 데이터 보호도 국경 간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FTA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추세이다.

전자상거래 챕터가 없는 일부 FTA의 경우에는 통신 챕터나 일반 예외 규정 등에서 언급되고 있다.

한편 사이버 보안은 사이버 범죄와 관련된 것으로 정보 공유 등 협력을 통해 이를 근절하기 위한 내용이 FTA에 규정되고 있다.(Pasadilla, Gloria O., 2020).

셋째,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가간 정보 전송, 즉 국경 간 데이터 흐름에 대해서는 경제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입장과 개인정보 등 소비자 보호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분야이다.

구글 등 주요 ICT 기업이 있는 미국은 국경 간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데이터의 국외 이전에 관한 제한 조치를 철폐하는 입장인 반면, EU는 기본적으로 국경 간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에는 찬성하나 소비자 정보 보호에 보다 중요성을 두는 입장이다(KOTRA, 2020).

넷째, 데이터 현지화(data localization)는 데이터를 해당 영역에 저장해야 하거나 관할 구역 외부로 전송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이다.

2018년 9월에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합의한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the 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Free Trade Agreement; USMCA)의 전자상거래 챕터에서도 데이터 지역화 조치 금지 조항(제19조 제12항)이 있으며 일본 주도로 체결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CPTPP) 협정은 회원국 사이에 국경 간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 촉진과 데이터 지역화 조치 금지를 명시한 의무규정을 포함하고 있다(KOTRA, 2020).

다섯째, 소스코드와 관련된 규정으로, 과거 FTA에는 소스코드 전송에 대한 조항이 없었다. 아마도 시장 접근을 위한 조건으로 소스코드의 이전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포함하는 최초의 것 중 하나가 일본-몽골 FTA일 것이다.

그러나 이 조항은 상용 소프트웨어에 적용되지만 중요 인프라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는 제외된다(Pasadilla, Gloria O., 2020).

최근 FTA에서는 소스코드의 강제이전은 금지하지만 상업적으로 협상된 계약 또는 정부 조달에서 자발적인 이전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정되고 있다(KOTRA, 2020).

여섯째, 서류없는 거래에 대한 규정은 전자상거래 규정보다 앞서 있었다.

실제로, 2001년 뉴질랜드와 싱가포르 간의 FTA에서 서류없는 거래에 관한 조항이 처음 발견되어 관세 행정 및 무역 커뮤니티를 위한 전자 환경의 필요성을 확립했다(Monteiro and Teh, 2017).

또한 ESCAP 회원국은 국경 간 서류없는 거래를 원활화하는 데 전적으로 기여하는 지역 협정을 채택했다. FTA에서 서류없는 거래에 대한 조항은 보통 통관 절차 또는 무역원활화에 대한 장에서도 찾을 수 있다(ESCAP, 2017a).

서류없는 거래에 대한 FTA의 조항은 다양하다. 어떤 경우에는 수입업자와 수출업자가 제출하는 무역 관리 문서를 전자적으로 이용 가능하고 법적으로 종이 버전과 동등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기타 조항은 예를 들어 싱글윈도와 같은 이니셔티브의 구현에 관한 것이다. 일부는 세계관세기구(WCO)와 같은 국제기구에서 개발한 국제표준을 고려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다른 유형의 조항은 협력, 정보 및 경험 공유, 규제 대화 또는 서류없는 거래 이니셔티브의 구현을 감독하기 위한 공동 위원회 구성을 의미한다(Pasadilla, Gloria O., 2020).

그러나 대부분의 FTA에서는 "서류없는 무역" 또는 "서류없는 무역행정"의 제목을 가진 특정 조항을 포함한다. 이들 조항들은 일반적으로 전자상거래 챕터에 있으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인도네시아협정은 세관 행정 챕터에 "서류없는 무역"이 있는 반면, 호주-중국 협정은 전자상거래 및 세관 행정 챕터에 그런 조항이 있다(ESCAP, 2017b).

일곱째,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와 관련한 규정으로, FTA에는 일반적으로 상업적 또는 마케팅 목적으로 전송되는 요청하지 않은 전자 메시지를 규제하는 법률을 보유하겠다는 약속도 포함되어 있다.

EU FTA는 스팸 메시지 처리에 관한 규제와 관련된 대화 및 경험 교환에 다시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호주와 같은 다른 FTA에는 "요청하지 않은 상업적 전자 메시지를 규제하기 위해 적절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과 같은 보다 구속력 있는 약속을 포함하고 있지만 "참여국의 법률 및 규정에 따라"와 같은 문구를 추가하여 재량을 제공하고 있다(Monteiro and Teh, 2017).

여덟째, 열린 정부(Open government)와 관련된 규정으로, 이는 정부 정보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것으로 당사국이 공개한 정부 정보에 대한 사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협력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다(Pasadilla, Gloria O., 2020).

(2) 관세 및 통관 이슈

일반적으로 국경 간 전자상거래에서 소량의 물품이나 디지털 제품의 경우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는 디지털 제품의 구매 비용을 절감시키고 소량 제품의 구매 확대를 가져와 국경 간 전자상거래를 보다 확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에서 이들 제품에 대한 과세를 하지 않고 있다.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관세 유예와 관련해서 1998년 2월 WTO 일반이사회에서는 한시적으로 무관세 조치를 결정한 이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즉, 최근 2021년 제12차 각료회의(MC12)에서도 무관세화를 MC 13차 회기가 있는 2022년 말 또는 회의가 연장될 경우 2023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WTO, 2021).

이러한 추세는 RTA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어 대부분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규정을 두고 있다. Monteiro and Teh가 2017년 조사한 75개 RTA 중 56개에서 전자 전송에 대한 무관세 규정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Pasadilla, Gloria O., 2020).

(3) 기타 이슈들

FTA에서는 기타 국경 간 전자상거래의 기본원칙, 정의, 범위 등에 대한 규정, 국제적 협력 등에 대한 내용이 규정될 수 있다.

첫째, 국경 간 전자상거래의 기본원칙으로 물리적 제품과의 무차별성에 대한 것이다. 즉,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디지털 제품에 대해 물리적 제품과 차별하지 않는다는 규정으로 이는 전자상거래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이다.

둘째, 전자상거래 관련 여러 가지 개념에 대한 정의가 규정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개념의 종류의 다양성 및 개념 정의 내용의 상이성 등이 존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전자상거래 제품에 대한 정의는 단순히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디지털 제품을 의미하는 반면, 운반매체(carrier medium)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나 전자적으로 전송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디지털 제품으로 정의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정의가 다를 경우 과세문제가 복잡하게 될 수 있다.

셋째, 전자상거래에 대한 RTA 당사자 간의 협력 촉진 규정으로, 전자상거래 관련 사안에 대한 정보, 경험 등에 대한 교류 및 공동연구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촉진하는 내용이다.

이외에 대화형 컴퓨터 서비스(Interactive Computer Services; ICS)[2](제3차 책임), 즉 중개 서비스 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 ISP)의 책임에 대한 규정이 있다. ISP는 캐싱 또는 호스팅 서비스(정보 저장), 전송, 라우팅 또는 연결 서비스와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문제는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ISP가 불법적으로 전송된 콘텐츠에 대해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든 부도덕한 콘텐츠든 어느 정도의 책임을 지는가인데 이와 관련한 ISP의 책임을 규정하는 것이다.

2 대화형 컴퓨터 서비스라는 용어는 컴퓨터 서버에 대한 여러 사용자의 컴퓨터 액세스를 제공하거나 가능하게 하는 정보 서비스, 시스템 또는 액세스 소프트웨어 제공자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특히 인터넷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는 서비스(ISP) 또는 시스템 및 도서관 또는 교육 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 또는 서비스가 포함된다.

2 주요 FTA의 전자상거래 조항 비교 분석

주요 FTA의 전자상거래 조항 비교 분석 대상과 관련하여 전자상거래 조항은 전자상거래를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모든 조항을 대상으로 하겠다.[3]

또한 주요 FTA는 한국의 최대 무역상대국인 중국, 미국, EU와의 FTA 및 최근의 메가 FTA인 RCEP으로 하겠다.

먼저 각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관련 규정 형태는 한·미 FTA, 한·중 FTA, RCEP의 경우는 특정 챕터(Chapter) 형태이며 한·EU FTA는 특정 챕터 아래 절(Section)의 형태로 되어 있다.

다음으로 전자상거래 관련 규정 내용에 관한 것으로, 앞에서 살펴본 전자상거래 관련 주요 규정을 중심으로 디지털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유예, 전자인증 및 전자서명에 대한 법적 유효성 인정,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 국내법적 기본틀, 중개서비스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 ISP)의 책임등에 관한 의무규정[4], 개인프라이버시 및 데이터 보호를 포함한 온라인 소비자 보호, 서류없는 무역, 국경 간 정보 흐름, 현지화, 소스코드, 협력 등에 관한 협력규정[5], 그리고 전자상거래 관련 개념의 정의, 원칙과 적용 범위, 무차별 대우 등의 기타 일반규정으로 나누어 주요 FTA의 전자상거래 규정을 비교하면 [표 1]과 같다.

3 전자상거래 조항은 보다 폭넓게 컴퓨터, 사이버, 디지털, 전자적,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 전자 상거래(e-commerce), 전자 정부, 정보 및 통신, ITC, 인터넷, 온라인, paperless 및 통신 등의 키워드가 사용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전자상거래가 직접적으로 언급된 조항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4 의무규정은 "채택 또는 유지해야 한다.(shall adopt or maintain)", "할 수 없다.(may not)" 또는 "요구할 수 있다.(may require)" 등과 같은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의무규정뿐만 아니라 해당 내용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규정까지 포함하여 본 연구에서는 정의하겠다.

5 협력규정은 "인정한다.(recognize)", "노력해야 한다.(shall endeavor)" 또는 "장려하다.(shall encourage)" 등의 다소 완화된 표현을 사용하여 필요한 규정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협력하는 차원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정의하겠다.

[표 1] 한국의 주요 FTA의 전자상거래 규정 비교

	한 · 미 FTA <제15장 전자상거래>	한 · 중 FTA <제13장 전자상거래>	한 · EU FTA <제7장 서비스무역설립 및 전자상거래> 제6절 전자상거래	RCEP <제12장 전자상거래>
의무 규정	· 제15.3조(디지털제품): 관세 등 부과금지, 무차별대우 등 · 제15.4조(전자인증 및 전자서명)	· 제13.3조(관세): WTO 관세 부과유예 관행 유지 · 제13.4조(전자인증 및 전자서명): 상호인정 관련 협력 규정 포함 · 제13.9조(분쟁해결의 비적용)	· 제7.48조(목적 및 원칙) 3항: 관세부과유예	· 제12.6조(전자인증 및 전자서명) · 제12.7조(온라인 소비자 보호) · 제12.8조(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 제12.9조(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메시지) · 제12.11조(관세)
협력 규정	· 제15.5조(온라인 소비자 보호) · 제15.6조(서류없는 무역) · 제15.7조(전자상거래를 위한 인터넷 접근 및 이용에 관한 원칙) · 제15.8조(국경 간 정보 흐름)	· 제13.5조(전자상거래 상의 개인정보보호) · 제13.6조(서류없는 무역) · 제13.7조(전자상거래에 관한 협력)	· 제7.49조(규제 문제에 대한 협력): 각종 전자상거래 이슈에 대한 대화 및 정보 교환 · 제7.50조(예외)	· 제12.4조(협력) · 제12.5조(서류없는 무역) · 제12.10조(국내 규제의 틀) · 제12.13조(사이버보안) · 제12.14조(컴퓨터 설비의 위치) · 제12.15조(전자적수단에 의한 정보의 국경 간 이전) · 제12.16조(전자상거래에 관한 대화) · 제12.17조(분쟁해결)
일반 규정	· 제15.1조(일반규정) · 제15.2조(서비스의 전자적 공급)	· 제13.1조(일반) · 제13.2조(다른 장과의 관계)	· 제7.1조(목적 및 적용범위) · 제7.2조(서비스무역설립 및 전자상거래 위원회) · 제7.48조(목적 및 원칙) 1, 2항	· 제12.2조(원칙 및 목적) · 제12.3조(적용범위) · 제12.12조(투명성)
정의	제15.9조(정의)	제13.8조(정의)		제12.1조(정의)

자료: 저자 정리 및 작성

3 향후 FTA 협상 시 전자상거래 조항 개선 방향

1. FTA 전자상거래 모델 조항 마련 및 적용

1) FTA 전자상거래 모델 조항

급증하고 있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는 새로운 성장 엔진 제공, 새로운 소비 트렌드 주도,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글로벌 경제, 국가 경쟁력 및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급증한 국경 간 전자상거래 물량에 대한 통관 절차의 신속성 및 효율성 등의 무역원활화 보장, 위험 화물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등을 통한 관련 범죄로부터의 사회 보호, 그리고 정확하고 효율적인 관세 및 세금의 징수, 글로벌 표준과 가이드라인 부족에 대한 극복 등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www.wcoomd.org/en/topics/facilitation/activities-and-programmes /ecommerce.aspx).

다양한 유용성과 문제점을 안고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제기구의 노력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FTA에서도 국경 간 전자상거래를 규율하는 모델 조항을 마련하여 적용하게 된다면 보다 효과적인 국경 간 전자상거래 관리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의 안정적인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각종 FTA에서는 전자상거래 관련 조항을 마련하고 보다 구체화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주요 FTA의 전자상거래 조항을 바탕으로 FTA에 적용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모델 조항을 일반 원칙과 정의 및 적용 범위 등을 규정하는 일반규정, 반드시 적용될 필요가 있는 의무규정,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의무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부담되지만 규정할 필요가 있는 협력 규정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일반규정에는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한 유형재화와의 무차별성 등의 일반적인 원칙과 목적, 적용 범위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아울러 관련된 용어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제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등의 무차별 원칙 규정과 상이한 관련 용어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규정되어야 하며 해당 FTA에서의 전자상거래 규정의 적용 범위, 예외 규정 등을 명확히 하여 오해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 의무규정으로 무관세 조치, 전자인증과 전자서명, 개인정보 보호 및 소비자 보호, 서류없는 무역, 급증하고 있는 요청하지 않은 상업적 메시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조치는 전자상거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으로 지금처럼 무관세 조치가 이어질 것이므로 의무조항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일부 개발도상국의 경우 관세수입 감소를 이유로 무관세 조치에 대한 재검토 요구가 있으나 전반적인 경향은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세화이다.

전자인증과 전자서명 및 서류없는 무역은 전자상거래를 위한 지원 서비스 분야로 반드시 기초적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는 의무조항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상호운영이 가능한 인증방법 및 인증기관 등에 대한 내용이 상세히 규정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 보호 및 소비자 보호는 다양한 전자상거래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되는 사항으로 개인정보 보호 및 소비자 보호 조치는 글로벌 경제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보호조치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속적인 전자상거래 발전을 저해하게 되므로 의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소비자 보호조치는 오프라인 거래에서의 보호조치와 동등한 수준으로 규정되어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 및 프라이버시 문제는 국제기준 고려 및 국내법적, 규제적 장치 마련 등의 내용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다.

서류없는 거래는 무역의 전자적 환경의 구비 측면에 있어 무역원활화 부분에서 오래전부터 논의된 내용으로 종이서류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전자문서에 부여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자문서는 국제기구나 국제표준을 고려해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요청하지 않은 상업적 메시지에 대한 규제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요청하지 않은 상업적 메시지에 대한 수신자의 동의 요구, 수신자의 수신 중지 조치,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의 내용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다.

셋째, 협력규정으로 국경 간 정보 이동, 현지화, 사이버 보안, ISP 책임[6], 소스코드, 국제협력, 국내 규제 기본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내용은 전자상거래가 발전하게 됨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문제점이며 다양한 이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므로 의무조항으로 규정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인 내용들이다.

그러나 전자상거래가 급증하고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 의무조항으로 규정할 수는 없지만 반드시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협력과 노력이 요구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경 간 정보 이동은 주요 ICT 기업이 있는 미국의 경우와 소비자 정보 보호에 민감한 EU의 입장이 다른 상황이나 소비자 정보 보호의 원칙하에서 국경 간 정보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 공공, 안보 등의 이유로 국경 간 정보 이동을 금지할 수 있는 제한 조치도 함께 규정될 필요가 있다.

데이터 현지화는 최근 규정되고 있는 내용으로 정당한 공공, 안보 목적 등을 제외하고 효과적인 데이터 접속, 처리 및 저장에 지정이 없는 범위에서 데이터의 현지화를 요구하지 않는 방향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경없는 전자상거래와 이에 수반되는 데이터의 국제적 이동하에서 물리적 시설을 반드시 현지에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전반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측면이 있다.

소스코드와 관련해서도 최근 규정되고 있는 내용으로 소스코드의 강제적 이전에 대한 금지와 자발적 이전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ISP 책임(제3자 책임)과 관련해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지는 마켓플레이스 등의 제3자에 대한 책임 문제가 중요 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6 Internet Service Provider

국제협력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 관련 주요 내용에 대한 정보, 경험 등의 교류 등 전자상거래 발전을 위한 국제적 협력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방향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전자상거래 관련 훈련, 연구, 국제 포럼 등의 다양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FTA 협상 국가들의 상황에 맞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 규제 기본틀과 관련하여 전자상거래의 국제 모델법이라 할 수 있는 '1996년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전자상거래 모델법'의 원칙과 합리적, 객관적인 방식으로 전자상거래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이 국내법에 규정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국내법 제도의 유지를 통해 국제 간 전자상거래와 관련해서도 동일한 이행과 구속력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FTA에 규정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FTA에서 국경 간 전자상거래 규정의 형태는 다른 조항에 섞여 있거나 특정 장 아래의 절(Section) 형태로 규정되기보다는 전자상거래 전용 장(Chapter) 형태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2] FTA 전자상거래 모델 조항

	전자상거래 챕터(Chapter)
일반 규정	1-1. 원칙 및 목적 1-2. 적용 범위 1-3. 정의
의무 규정	2-1. 관세 유예(무관세) 2-2. 전자인증과 전자서명 2-3. 개인정보 보호 및 소비자 보호 2-4. 서류없는 무역 2-5. 요청하지 않은 상업적 메시지
협력 규정	3-1. 국경 간 정보 이동 3-2. 데이터 현지화 3-3. 사이버 보안 3-4. ISP 책임 3-5. 소스코드 3-6. 국제협력 3-7. 국내 규제 기본틀

자료: 저자 작성

다른 조항에 섞여 있는 경우 적용하는 기업 입장에서 효과적으로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며 특정 장 아래 절로 규정하기에는 현재 국경 간 전자상거래 규모가 세계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나 성장속도를 고려할 때 부족한 부분이 있다. 따라서 국경 간 전자상거래 전용 장 형태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FTA 전자상거래 모델 조항의 유용성과 적용

앞에서 제시한 FTA 전자상거래 모델 조항 마련을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FTA 협상과 이미 체결된 FTA의 개정 시 유용하게 작용할 것이다.

표준화된 조항은 다른 여러 가지 FTA마다 상이한 내용에 통일성을 제공하여 FTA를 활용하는 기업 입장에서도 간편하게 적용,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협정을 집행하는 정부 당국 입장에서도 통일된 정책 방향을 가지고 협상과 집행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한편 개도국 입장에서는 먼저 국경 간 전자상거래를 위한 기본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상황에서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 시 FTA 전자상거래 모델 조항을 기준으로 삼아 구축하게 된다면 향후 FTA 협상 및 국경 간 전자상거래를 통한 경제적 이익을 획득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2. 민감한 전자상거래 문제에 대한 국제적 합의 노력

1) ISP 책임 관련 문제

국경 간 전자상거래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ISP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내 입법도 추진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FTA에서도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ISP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ISP 책임과 관련해서 2020년 7월에 발효된 USMCA의 (제19.17조)에서 규정되어 있었으나 최근에 체결된 EU와의 FTA 등에서는 ISP의 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규정되고 있다.

ISP의 책임이 적극적인 측면에서 불법활동이나 정보를 찾아내어 관련 기관에 알려줄 의무까지는 부과하고 있지 않지만, 관련 공공기관이 불법활동이나 정보를 요청 시 알려줄 의무는 부과하고 있다.

미국은 자국 내 플랫폼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ISP에 대한 법적 책임 부과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EU는 플랫폼 사업자의 콘텐츠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자는 입장이다. 즉, 플랫폼 사업자가 자신의 플랫폼의 콘텐츠가 유해하거나 불법적인 것을 알았을 때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으며 이러한 콘텐츠의 유통을 감시할 의무가 있다는 입장이다.

캐나다는 민감한 사안으로 통상 규범이 아닌 국내법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이며, 이스라엘, 호주, 페루 등은 이러한 논의가 시기상조로 입장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이다(KOTRA, 2020).

한국의 경우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제1항과 제3항에서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공행위자로 본다"는 규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2(정보의 삭제요청 등) 제1항과 제6항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ISP)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ISP가 조치를 취한 경우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즉시 통지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이러한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ISP는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관련 조치를 취했더라도 ISP가 완전히 그 책임을 면제 받는 것은 아니다.

또한 피해자 등으로부터 통지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도 ISP는 과실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관련 판례(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다 36801 판결)에서 적시하고 있다(우지숙, 2019).

따라서 ISP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국가마다 입장의 차이가 있으나 이들에 대한 책임이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내용은 FTA 협상 시에도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내용이며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으므로 국제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국경 간 전자적 전송물의 내국세 적용 문제

국경 간 전자적 전송물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관세는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그러한 내용은 각종 FTA에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관세와 별도로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에 대해서는 부과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즉, 싱가포르, 브라질 등 일부 회원국들은 전자적 전송물에 내국세, 수수료 등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KOTRA, 2020) 실제로 관세 이외의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의 경우 국내 물품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인해 과세되는 경우가 많다.

한·미 FTA에서는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디지털 제품에 대해 관세 이외에 수수료(fees), 기타 부과금(other charge)을 부과할 수 없다고 본문에 명시하였지만(제15.3호 1항), 협정문 각주 1에서는 이 협정과 합치하는 방식으로 부과되는 한, 내국세(internal taxes) 또는 기타 국내 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한국은 '2014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2015년 7월부터 구글, 애플 등 해외 오픈마켓에서 구매하는 디지털콘텐츠에 대하여 해외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다.

TPP(제14.3조)에서는 전자적으로 전송된 콘텐츠를 포함하여 전자거래에 관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단, 본 협정과 합치하는 방식으로 부과될 경우 내국세, 수수료 및 기타 부과금은 부과할 수 있다고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다(박지현, 2018).

따라서 FTA에서도 전자적 전송물에 대해 관세뿐만 아니라 내국세 등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세는 면제되지만 국내 물품과의 형평성 측면과 수입국의 세수 확보 측면에서 내국세 등의 부과가 이루어지는 상황하에서 내국세

등에 대한 명확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국제적 합의 노력과 향후 진행되는 FTA 협상에서도 주요 의제로 다루어 규정할 필요가 있다.

3) 국경 간 데이터 이동 문제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은 개인정보 보호 측면과 공공의 안전과 안보 측면에서 민감한 사안으로 이에 대해서는 제한할 수 있으나 불필요한 제한 조치 및 금지를 부과하는 것은 국경 간 전자상거래를 원활화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을 주장하는 미국의 입장과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EU의 입장,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민감한 중국의 입장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아마존이나 구글 등 주요 ICT 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소비자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적인 원칙하에서 자유로운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FTA에서도 규정될 필요가 있다.

한·미 FTA, RCEP, USMCA, EU-Japan EPA에서는 관련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며 최근 발효되는 FTA에서는 관련 내용이 규정되고 있다.

따라서 제한된 범위에서 일부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을 금지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의 자유화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향후 협상 및 이미 발효 중인 FTA 개정 시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제한된 범위에 대해서는 국제적 협상과 논의를 통해 통일되고 구체화된 내용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물론 관련 기업 차원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보장할 수 있는 인력, 관련 규정 등의 확충이 필요하며 이를 통한 기업의 정보 보호 역량 강화는 기업의 경쟁력과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4 요약 및 결론

국경 간 전자상거래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간 협상이 원활화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FTA를 중심으로 국경 간 전자상거래 규범이 마련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FTA의 전자상거래 규범은 각 국가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되고 있으며 국경 간 전자상거래가 발전, 확대됨에 따라 초기 FTA보다는 최근 체결된 FTA에서 보다 다양하고 깊이 있는 내용으로 규정되고 있다.

다양하게 규정되고 있는 전자상거래 규정 가운데 반드시 규정되어야 할 의무규정과 논의가 필요하지만 규정할 필요가 있는 협력 규정, 그리고 기타 관련 규정으로 된 FTA 전자상거래 모델 조항을 마련하여 적용하게 된다면 향후 진행될 FTA 협상과 이미 체결된 FTA의 개정시에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FTA 전자상거래 모델 조항은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관세 유예(무관세), 전자인증과 전자서명, 개인정보 보호 및 소비자 보호, 서류없는 무역, 요청하지 않은 상업적 메시지와 관련된 의무조항과 국경 간 정보 이동, 데이터 현지화, 사이버 보안, ISP 책임, 소스코드, 국제협력, 국내 규제 기본틀과 관련된 협력 조항, 그리고 기타 조항으로 구성될 수 있다.

특히 아직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견이 있으나 규정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는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내국세 부과, 국경 간 데이터 이동, ISP의 책임 분야를 중심으로 향후 FTA 협상 시 그리고 이미 체결된 FTA 협상의 개정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 및 관련 기업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eMarketer의 2021년 5월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전 세계 소매전자상거래 판매 상위 10대 국가 중 5위(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eMarketer, 2021).

한국은 이미 많은 국가와 FTA를 체결해 놓은 상태이나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다자간 FTA, 메가 FTA 및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 IPEF)와 같은 경제협력체 협상과정에서도 국경 간 전자상거래 분야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하에서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차원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